2016학년도

세계로 뻗는 품격 높은 한국인 교육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2015. 8.

대원 40년-2

도전의 40년! 영광의 40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016학년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남·여 10학급)

모집 단위	학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영어과	6과
	학급 수	1	2	2	1	2	2	10학급
정원 내	사회통합(20%)	5	10	10	5	10	10	50
	일반전형(80%)	20	40	40	20	40	40	200
	합계	**25**	**50**	**50**	**25**	**50**	**50**	**250**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정원의 2%이내						5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의 3%이내						7
	외국인전형							20
	합계							**32**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학과별로 선발하며(학과 복수 지원 금지), 모집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사회통합 전형은 유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해당 학과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1단계 사정 가능함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정원을 정함.
(독일어과 1명, 프랑스어과 3명, 스페인어과 3명, 일본어과 1명, 중국어과 3명, 영어과 4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정원 외' 각 전형에서, 합격자는 전원 지망학과에 배정함.

2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공통 사항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전국단위 모집의 자율중학교, 특성화중학교,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고입내신산출평가성적을 제출해야함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18학기)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포함 ○ 해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는 자는 국내 및 해외 교육과정을 합하여 9년(18학기)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여야 함. 4)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구 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자 ※ 위 '2)~3)'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항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나. 전형유형 및 세부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table>
<tr><th colspan="3">전형 구분</th><th colspan="2">유형별 지원 자격</th></tr>
<tr><td rowspan="6">정원내</td><td colspan="2">일반 전형</td><td colspan="2">공통자격을 갖춘 자</td></tr>
<tr><td rowspan="4">사회통합전형</td><td rowspan="3">기회균등전형</td><td rowspan="2">(60% 우선선발)</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td></tr>
<tr><td>-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td></tr>
<tr><td></td><td>-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td></tr>
<tr><td rowspan="2">사회다양성전형</td><td>1순위</td><td>-「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td></tr>
<tr><td>2순위</td><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장 이하)</td></tr>
<tr><td rowspan="3">정원외</td><td colspan="2">보훈자 자녀전형</td><td colspan="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td></tr>
<tr><td colspan="2">고입특례 대상자 전형</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서울특별시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td></tr>
<tr><td colspan="2">외국인 전형</td><td colspan="2">•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td></tr>
</table>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기회균등전형 입학자는 입학 후 매년 자격심사를 다시 받아 당해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함

✦ 참고 사항 ✦

1. 사회통합전형 중『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일반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됨

나.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을 지원하며 **교육지원대상자로서의 '국가보훈자 자녀'는 정원 외 전형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함**

다. 기회균등전형의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최근10개월 평균) **【참고자료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임

라. **학교장 추천 대상자**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통합전형 중『사회다양성전형』

가. 지원자격제한(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나

-'**직장 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과세액** 기준을 추가 적용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월 추정 소득	재산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5,961,964원	182,127원	199,987원	185,538원	5,775,915원	577,591,500원	756,2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는 부모 모두 합산 (**【참고자료 2】참고)**

나.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함.

라.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유의 사항

✦ **다자녀 가정 자녀 유형 지원 제한**

-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6학년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을 적용하는 학교는'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 명부를 작성·관리함(준영구보존)

마.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가. (정원외) 보훈자자녀 전형 : 교육지원대상자로 모집정원의 3% 이내 선발

나. (정원내) 기회균등전형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서(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함

4. 고입특례대상자

가. 정원 내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일반전형 대상)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나. 정원 외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정원외전형 대상)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북한 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3 제출 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모든 지원자(공통)	o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 o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학교장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3학년 성적은 석차등급과 성취도수준이 모두 기재된 영어성적확인서 1부 -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는 국내 최종 학년 제적증명서 1부, 해외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및 최종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1부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과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6학년도 고입 내신산출평가 영어 성적(성취도 수준, 석차등급 모두 기재) 확인서(해당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 날인) 각 1부 o **자기소개서 출력본 1부** - 작성시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상기 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기재 모두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예정) o **중학교 학교생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직인, 단면 출력) - 수상경력(4번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은 출력 시 제외 ※ 비교과(출결, 봉사 등) 산출 기준일은 2015. 11. 09. (월) o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동의 후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서류 접수 시 제출 o **주민등록등본 1부**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대 상			제 출 서 류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 공통		•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국가보훈자·고입특례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6학년도 고입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기회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비법정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등본상 가족구성원 분리 시 모두 제출)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발급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원본대조필 : 해당 중학교 직인 날인(졸업예정자)) 1부 -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산세(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보훈자 자녀 전형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관할 보훈지청
사회다양성 전형	사회다양성 공통 (부•모 모두제출)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원서마감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동주민센터)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다문화가정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사본 1부		
	북한이탈 청소년		•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 1부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교원·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도서벽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1부(졸업자) • 부. 모.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기재) 각 1부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학부모 확인서 1부		
	환경미화원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한부모가정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부·모 모두 제출		

대상	제출서류
보훈자 자녀 전형	•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고입특례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6학년도 고입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1부 :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고입특례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6학년도 고입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 • 타시도 출신자 : 고입특례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외국인 전형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 • 중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 VISA (일반연수 D-4) 발급 후 입학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플러 사용 금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16학년도 고입내신산출평가' 응시자의 경우 고입내신산출평가 성적만 반영하며(내신성적 반영 안됨),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이 허용 안됨

※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여 출력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단면 출력) 및 영어등급확인서는 원본대조필 및 직인으로 간인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15.11.16(월) ~ 11.20(금) (마감일은 13:00까지)	홈페이지(본교)	o 전형료 27,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o 마감일은 13:00까지 o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출력한 원서 및 제반서류 접수		2015.11.16(월) ~ 11.20(금) (09:00 ~ 17:00)	본교	o 직접방문제출(대리인 가능), 우편접수불가
면접대상자 발표		2015.11.24(화) 17:00	홈페이지(본교)	o 1단계 합격 여부 확인
면접 전형일		2015.11.30(월)	본교	o 접수증, 신분증 지참 o 면접시간 추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5.12.03(목) 17:00	홈페이지(본교)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15.12.04(금)~12.07(월)	본교	o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면접 전형일	2015.12.08(화) (추후공지)	본교	
	합격자 발표	2015.12.08(화) (추후공지)	본교	
합격자 예비소집		추후공지	본교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6.01.11(월) ~ 01.14(목)	·	

※ 학교 생활기록부 출석마감 기준일은 11월09일(월)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되며, 이 경우 다른 전기고에 지원 할 수 없음(단, 전기고 추가모집 및 후기 일반고 지원가능)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단계>		<2단계>
영어 내신성적(160) + 출결(감점)	→	1단계 성적(160) + 면접(40)
[정원의 1.5배수 선발]		[최종 합격자 선발]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 + 출결(감점)'로 선발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시 자동 계산

영어 내신성적 =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환산점수의 합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1단계 동점자는 전원선발

나) 중 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등으로 성취도 등급 부여

다) 중3 석차 9등급제 학기당 등급별 환산점수

석차백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1) 학기별 영어성적 환산식 : 환산점수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점**

(2) 영어 내신성적 산출 유의사항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을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한다.

② 2016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입내신산출평가 영어성적(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입내신산출평가 영어성적을 반영한다. (타·시도 고입내신산출평가 영어 성적(등급) 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③ 2, 3학년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소속 중학교의 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되 소속 중학교의 지침이 없는 경우 학년별로 최인접 성적을 반영한다.

(3) 해외 중학교 출신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① 2학년 국내 성적만 있고 3학년 국내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 2학년은 국내 성적으로, 3학년은 해외 성적을 반영한다.

② 2~3학년 국내 중학교 성적이 모두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 :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 중, 2학년은 성취도 수준(A,B,...)으로, 3학년은 내신등급(9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평점에 따른 변환 점수

과목별 성적	GPA	A	B	C	D
	점수	≥90점	≥80점	≥70점	< 70점
변환점수		5	4	3	1

※ 변환 점수에 따른 환산 점수

등 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평균	4.9이상	4.7이상	4.5이상	4.3이상	4.0이상	3.7이상	3.5이상	3.0이상	3.0미만
환산점수	40	38.4	35.6	30.8	24	16	9.2	4.4	1.6

③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라)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 = – (무단결석 일수)

(1)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결 점수 산출 기준 : 2015. 11. 09.(월)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2)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3)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한다.
(4) **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 점수 산출** : 환산된 3학년 내신등급으로 반영한다.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출결점수	0점	0점	-1점	-2점	-3점	-4점	-6점	-8점	-10점

<출결점수 감점 예외사항>

"2012.06.12 이전 출국한 부친 또는 모친 등 부양 의무자 중 1명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 학생"에 대하여 미인정유학기간의 결석처리로 인한 출결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없음(단, 중학교의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2) 2단계 : '1단계 성적(160) + 면접(40)'으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영역) + 인성영역
※ 면접을 위한 사전단계인 서류평가도 면접점수에 포함됨

나.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1단계					2단계	총 점
2-1	2-2	3-1	3-2	출결	면 접	
40	40	40	40	감점	40	200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과정(20점)**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 지원동기 및 입학 후 활동계획(5점) 학교특성과 연계하여 본교 및 희망 전공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계기와 준비과정,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입학 후 활동 계획	
	■ 졸업 후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5점) 본교 졸업 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계획 및 실현방법	
인성영역	**■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10점)** **※ 핵심인성요소**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지원자의 집합에 의한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재시 0점 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평가항목 :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 (공통) 자기주도학습전형

<table>
<tr><th>전형 구분</th><th colspan="2">세 부 내 용</th></tr>
<tr><td>일반전형</td><td>사정 방법</td><td>(1) 지원한 학과별로 사정함
(2)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모집인원의 1.5배수 선발
(3)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전형 실시
(4) 1단계와 2단계점수를 합한 입시총점(200점)으로 모집인원 만큼 최종선발
(5)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전·편입 등을 통해 충원함</td></tr>
<tr><td rowspan="2">사회통합전형</td><td>자격 심사</td><td>(1) 중학교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 대상자 검증 및 학교장 추천서 발부
(2)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td></tr>
<tr><td>사정 방법</td><td>(1)~(3) 일반전형과 동일
(4) 입시총점(200점)으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의 전 과정을 관장
-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 선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 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 배려하여 선발

◆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 3단계 : 2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사회통합전형 2단계 미충원 시에 3단계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30%이내에서 선발
<table><tr><th>학과</th><th>독어과</th><th>불어과</th><th>서어과</th><th>일어과</th><th>중어과</th><th>영어과</th><th>학과별 최대선발 인원</th></tr><tr><td>인원</td><td>1</td><td>3</td><td>3</td><td>1</td><td>3</td><td>4</td><td>30%(15명)</td></tr></table>
❍ 합격 후에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엄정 조치
※ '2016학년도 고입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5)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전·편입 등을 통해 사회통합전형대상자로 충원함</td></tr>
</table>

전형 구분	세 부 내 용	
보훈자 자녀 전형	사정 방법	⑴ 고입특례대상자 전형과 동일함
고입특례 대상자 전형	사정 방법	⑴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학과구분 없이 전체 모집인원의 1.5배수(8명) 선발 (CUT라인 동점자 모두 포함) ⑵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전형 실시 ⑶ 1단계와 2단계점수를 합한 입시총점(200점)으로 전체 모집인원 만큼 최종선발(합격자는 전원 지망학과에 배정) ⑷ ⑶에서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전·편입 등을 통해 해당 자격자로 충원함
외국인전형	사정 방법	⑴ 일반 전형과 동일함 ※ 외국인의 경우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추가모집 사정방법도 이에 준함.

7 동점자 사정 기준

전형 구분	동점자 사정 기준
모든 유형	- 1단계 동점자는 전원선발 - 2단계 동점자는 면접점수 총점, 자기주도학습과정 점수, 영어 내신 총점, 3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8 합격자 배제 조건

가.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결과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나. 입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한 지원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다. 전국 소재 전기고 중 이중지원자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교)를 제외한 모든 전기고는 접수 일자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는 전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9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및 장학금 안내

가. 교육비 지원 내용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6">지원기준 및 지원범위</th></tr>
<tr><th>국민기초
생활수급</th><th>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th><th>법정차상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th><th>차차상위
(최저생계비150%)</th><th>학교장
추천</th><th>사회다양성
전형</th></tr>
<tr><td rowspan="4">지원
범위</td><td>장학금</td><td colspan="5">1단계 성적이 152점 이상인 경우 매월 일정액 지급</td><td rowspan="4">지원하지 않음</td></tr>
<tr><td>수업료
입학금</td><td>전액 지원
(지자체)</td><td>지자체 1/2
교육청 1/2</td><td>전액 지원
(교육청)</td><td>일반고 수준 : 본인 부담
초과분 : 교육청 지원</td><td rowspan="2">지원하지 않음</td></tr>
<tr><td>학교운영
지원비</td><td colspan="3">일반고 수준 지원
(교육청)</td><td>지원하지 않음</td></tr>
<tr><td>기타 수익자
부담경비</td><td colspan="5">교육청 지원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td></tr>
</table>

학비 지원 유의 사항

1. **학비 등의 각종 교육비 지원은 「2016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학비를 지원함**
2. **입학 전형과 관계없이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학비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 위계층까지만 학비를 지원함

※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교육비지원 시 사용하지 않음

나. 사회통합 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진로·상담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활동 운영 진로상담 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학교 생활 적응	졸업생 멘토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및 진학 컨설팅 도움
교과 향상	신입생 대상 주요 교과 향상 입문 학교 운영 영어·수학 질문 교실 운영 전공어 실력 향상반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
비교과 나눔	명사 초청 강연회 연4회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리더십 교육(7-habits, 카네기 등)지원
기타 교육비 또는 생활비	필요한 경우 대원 학원 내 행복함께나누는 재단 협의를 거쳐 지원 예정

※ 위 프로그램은 2016학년도에 한해 실시 예정인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인원은 제한 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가. 이중 지원 금지 :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개교에만 지원 가능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교)를 제외한 모든 전기고는 접수 일자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는 전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나. 1단계 탈락자에게는 전형료 27,000원 중 20,000원을 전형료 결재 계좌로 환불함(단, 환불 수수료 제외한 금액)

다.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학교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단, 국제고·외고가 없는 지역의 기말고사 미 시행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 과목 등급을 해당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마. 제출한 일체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사.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제1외국어, 선택과목 등)

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물을 본교에 제출해야 완료**되며,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자. 본교 신입전형에 응시하기위해 인터넷 및 제반서류에 입력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입학전형 및 전형 종료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지원자는 입학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차.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카.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파.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함.

Wisdom·Humanity·Courage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ww.dwfl.hs.kr

우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중곡 4동)

• Telephone : (02) 2204-1513~1515 • Fax : (02) 2204-1544

참고 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6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지원자격: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15.7.1.(시행일)이후 시행되는 사회통합전형에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5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4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363,681	136,368,100	92,730
2분위	2,126,651	212,665,100	161,390
3분위	2,713,007	271,300,700	226,950
4분위	3,237,033	323,703,300	305,550
5분위	3,721,939	372,193,900	378,290
6분위	4,236,299	423,629,900	455,440
7분위	4,891,641	489,164,100	553,740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9분위	7,271,266	727,126,600	1,115,100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